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2022년 7월 21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20.(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2. 7. 20.(수)	담당부서	입지총괄과
담당과장	이영호 과장(044-203-4430)	담 당 자	오재열 사무관(044-203-4409)

공장 신·증설 관련 모래주머니 규제 제거 추진

-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관련 입지규제 개선 가속화 -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혁신의 신속한 이행, 신정부 업무보고 후속조치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7월 20일(수)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산단 입주기업과 경제단체 등이 참석하는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기업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7.20(수) 오후 4시, 인천 남동국가산단 산업단지공단 대회의실
- **참석** : LG화학, ㈜HKC, 우영유압, 평산기공 등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등 경제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 **주요 내용** : 공장,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등 산업입지 규제 개선 논의 등

○ **장영진 차관은 새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선 과제와 **산업부가 핵심(킬러) 규제*** **해소**를 위해 기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정비 방안을 참여 기업인 등에게 설명**하고,

* 산업부는 ①투자 프로젝트 관련 규제, ②핵심(킬러) 규제(입지, 환경, 노동 등), ③숨은 규제, ④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을 『4대 산업규제 혁신방향』으로 설정하고 규제혁신 등 추진중

○ **국민과 기업인들이 정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고자, 규제개선 과제인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의 자연보전권역 내 신·증설 면적 확대,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등에 관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 또한,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 중소기업, 경제단체 등과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무엇인지 찾아내어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 밝히며, 기업과 경제단체도 규제혁신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산업부는 금번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이외에도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를 위해 8월중 관련 규정인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에서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외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입지·공장 관련 규제를 원점(제로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기업들이 불편해하는 모래주머니를 과감하게 제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연내), 산업집적법 개정 착수('23년 초)

□ 참고로, 금번 '**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를 통해 소개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통해 **개선되는 규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❶ 자연보전권역 내 폐수배출 없는 공장 규모 완화($1,000m^2 \rightarrow 2,000m^2$)(시행령 별표3)

* (사례) 여주시 소재 T사의 공장 증설이 불가능하였으나, 시행령 개정후 공장 증설이 가능

❷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시행령 제26조)

* (사례) 인천 경자구역에 입주한 국내복귀기업 ㄱ사는 향후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가능

2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

❶ 공장에서 판매가능한 품목에 타사제품과의 융복합 제품 추가(시행규칙 제2조)

* (사례) 자사 제품 사물인터넷 센서와 타사 제품 AED(자동심장충격기)가 결합된 스마트 AED 판매 가능

❷ 산단 입주기업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시행규칙 제42조)

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의 산업단지 내 임대업 허용(시행령 제6조)

* (사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ㄴ사는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지원 사업 참여 가능

❹ 소규모 공장(500m^2 미만)의 관내 이전 시 공장변경등록 허용(시행규칙 제12조)

3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지식산업센터(舊 아파트형 공장)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❶ 폐수 배출이 없는 공장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지식산업센터 입주허용(시행령 제34조)

❷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지원시설 종류 확대*(시행령 제36조의4)

*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일부 입주 불가업종 이외 업종의 지식산업센터 입주 허용

❸ 산단 내 공장용지에 건설한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안 제43조제5항)

* (예) 기존 제조업(공장)만 입주가능 → 지식기반산업 및 정보통신산업도 입주 가능

❹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간소화(안 제12조제1항)

【붙 임】 기업간담회 개요 및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상세 내용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오재열 사무관(☎ 044-203-440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입지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요 등

□ 추진 배경

○ 「경제 규제혁신 전담반(TF)」 등을 통해 마련한 **규제개선안의 신속한 이행·지원***으로 새 정부 **규제혁신에 대한 기업·단체 등의 체감도 제고**

*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으로 입지규제 개선 완료 추진

○ 새 정부의 **규제혁신에 기업인, 기업단체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업인 등의 **의견, 제안 등을 수렴**하여 **규제혁신 지속동력 확보**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7.20(수) 오후 4시, 남동국가산단 산단공 대회의실**

○ 참석기관 : LG화학, ㈜HKC, 우영유압(주), ㈜평산기공 등 산단 입주기업,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장, 남동국가산단 경영자협의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캠코 및 산업단지관리공단 등

□ 간담회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6:00 ~ 16:03 ('3)	모두 발언	장영진 차관
16:03 ~ 16:10 ('7)	산업입지 정책현황 및 규제 혁신 방향 발표	산업부 (과장)
16:10 ~ 16:50 ('40)	산업입지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논의	참여기관
16:50 ~ 16:55 ('5)	경제단체·기업 건의에 대한 답변	산업부 (과장)
16:55 ~ 17:00 ('5)	마무리 발언	장영진 차관

□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 주요 내용
산업집적법 시행령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임대업 허용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도시형 공장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의 입주업종 확대
	산단 내 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업종 명확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증설 제한 완화 (1,000 → 2,000m^2)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공장에서의 판매 가능 품목 범위 확대
	지식산업센터 사업계획서 간소화
	소규모공장(500m^2 미만) 관내 이전 절차 간소화
	감정평가법 개정에 따른 산업집적법 내 관련 용어 수정
	코로나 등 경영악화 고려, 산단 입주 후 공장 착공기한 연장 (2년 → 3년)
	별지 제9호 서식 개선

참고2 **산업집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상세 내용**

1 수도권 공장 신·증설 제한 완화

❶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 (시행령 별표3)

○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가평·양평 등) **내의 공장이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더라도 해당 **공장의 규모를 1,000m^2 이내로 제한**(증설 포함)

○ (**개선**)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으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선**(1,000m^2→2,000m^2)

❷ 국내복귀기업의 수도권 경자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시행령 제26조)

○ (**현행**) 수도권 내 경자구역(인천, 경기)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복귀기업은 불허**

○ (**개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내 경자구역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

2 공장 설립·운영의 불편사항 해소

❶ 공장에서의 판매 가능 품목 범위 확대 (시행규칙 제2조제8호)

○ (**개요**) 기업은 자사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한해** 공장 부대시설(제품판매장)을 통해 **판매가 가능**

○ (**조치**) 타사 제품과 결합(융합)을 통한 제품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공장 부대시설에서 판매가능한 제품을 타사제품과 융복합한 제품*으로 확대**

* (예) 사물인터넷 센서 제조기업이 타사 제품(자동심장충격기, 의료기기)에 자사 사물인터넷 센서를 결합하여 판매

❷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착공 기한 연장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 (**현행**)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후 **2년 이내에 공장을 착공**하여야 하지만, **코로나 등 일시적 경영악화로 공장착공 지연 사례가 발생**

○ (**개선**)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착공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❸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재편 사업 지원 (시행령 제6조제5항)

○ (**현행**) 자산관리공사가 **신탁회사*를 통해 산단 내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하나, 산단 내 **임대업 제한**으로 **사업추진이 불가**

* 신탁회사가 사업재편 기업의 공장을 매입한 후, 해당 기업에게 재임대

○ (**개선**) **자산관리공사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신탁회사에 한해 산단 내 임대업을 허용**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 촉진·지원**

❹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 시 행정절차 간소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

○ (**현행**) 공장등록 변경사유가 회사명·대표자명 변경 등으로 제한적이어서 면적 500㎡ 미만 소규모 공장도 관내(동일 시군구) 이전시 변경등록 불가능

○ (**개선**) 공장등록 변경사유에 소규모 공장의 관내 이전을 추가하여 영세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3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❶ 도시형공장 기준 완화를 통한 공장 입지규제 개선 (시행령 제34조)

○ (**현행**) 산업단지 밖 또는 비공업지역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능한 **도시형공장* 기준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은 미포함**

* 반도체 집적회로 등 첨단산업을 영위하면서 공해발생이 낮은 공장 (법률 제28조)

○ (**개선**) 폐수배출시설을 구축한 공장이 **폐수의 전량 재활용 등을 통해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등을 도시형공장에 포함**

❷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입주업종 확대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 공장) :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은행, 약국, 편의점 등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

○ (**현행**) 지식산업센터의 30%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이며 **입주가능 시설(업종)**을 은행, 약국, 어린이집 등으로 **제한·운영중**

○ (**개선**)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내 입주가능 시설**을 농업, 도박업, 주택공급업 등 서비스업 시설을 **제외한 시설(업종)로 대폭 확대**하여 입주기업 등의 편익 제고

❸ 산단 내 공장용지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종 확대 (시행령 제43조제5항)

○ (**현행**)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공장), 정보통신산업, 지식산업이 입주 가능하지만, **산단 내 공장용지**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가 불가능**

*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 : **공장용지, 정보통신산업용지, 지식산업용지**, 폐기물처리시설용지, 물류용지 등

○ (**개선**) 산단 내 산업시설구역의 공장용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과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

❹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의 공장의 사업계획서 간소화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등)

○ (**현행**)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과 소규모 공장을 영위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양식이 방대**(5쪽 분량)

○ (**개선**) **간소화된 사업계획서 양식을 신설하여**(1쪽 분량) **기업불편 해소**. (끝)